



제 419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53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액 채취 금지의 예외로서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 명시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4. 11. 7.

다. 회 부 일 : 2024.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제2항제2호)을 살펴보면, 체액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체액 채취 금지의 예외로서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 명시

개정안은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을 위하여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현행법상 금지되는 체액 채취행위의 예외사유로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생략)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 ----- ----- ----- -----예방, 동물실험 및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사람은 물론 동물의 경우에도,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한 수술 등의 과정에서는 수혈이 요구될 수 있는바,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혈액이 공급될 필요가 있음.

동물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이 공급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서, 기관 등에서 사육동물을 대상으로 채혈하는 ‘공혈(供血)’을 통하거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사람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헌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① 개의 경우 전체 혈액제제¹⁾의 94%가 공혈, 6%가 헌혈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고, ② 고양이의 경우 83%가 공혈, 17%가 헌혈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²⁾³⁾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동물의료로 위해 공급되는 혈액의 공급량이 실제 필요한 양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에서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⁴⁾ 대학동물병원의 100%, 일반동물병원의 85%가 전체 동물 혈액제제 공급량 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른 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반려동물 헌혈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1)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혈액제제 허가 및 제조품질관리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전혈장제제”, “성분제제”, “분획제제”가 해당됨

2)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반려동물 혈액관리 개선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23,

3) 대표적인 관련 기관으로는 공혈의 경우 한국동물혈액은행(KABB), 헌혈의 경우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가 존재함

4) 해당 연구용역은 대학동물병원 3개소, 일반동물병원 214개소로부터 응답을 회신받았음

현행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예외로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②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 ③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를 체액 채취행위 금지의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고 있음.⁵⁾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은 체액 채취행위 금지의 예외사유 중 동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이나,

현행법이 예외사유의 예시로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을 서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혈액 나눔 행위의 합법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의 우려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2.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
3.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액 채취행위 금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혈액 나눔 행위가 불법으
로 해석될 여지를 없애고 반려동물 헌혈문화가 현재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첫째, ‘혈액 나눔’ 또는 ‘혈액 나눔 동물’의 법적 개념정의가 정립되
어 있지 않음. 대체로 ‘혈액 나눔 동물’이 공혈동물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2016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혈액 나눔 동물의
보호·관리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혈액 나눔 동물을 보유하고 있
는 시설 또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혈액 나눔’이 공혈만을 의미
하는지 헌혈도 포함하는 것인지 등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어 보임.

둘째, 사람과 사람 간의 헌혈의 경우, 그 과정이나 금지행위 등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혈액관리법」을 통하여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
나, 동물의 혈액 나눔에 대하여는 그 기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율
이 없음.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는 “혈액 나눔 동물의 보호·관리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공혈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음.⁶⁾

6) 참고로 혈액 나눔 행위에 대한 관리와는 별개로, 혈액 나눔 행위를 통하여 생산되는 결과물인 동물 혈액제제의 관리에 있어서는,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를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에 대하여 그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혈액 나눔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복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 수의학적 치료를 위하여 수혈용 혈액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이 불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에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7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등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 혈액제제 허가 및 제조품질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음

참 고

혈액 나눔 관련 법률안 발의 이력(제20대~제21대 국회)

대수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내용	심사경과
제20대 국회	2008279	한정애의원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혈액 나눔 권장 - <u>동물혈액공급·판매업 허가제</u> 신설	폐기 (’17. 12. 16.)
제21대 국회	2119475	민홍철의원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체액을 채취하는 경우 <u>채취량 상한 기준</u> 설정 - 반려동물 헌혈 장려 및 적극적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u>지원책</u>	임기만료 폐기 (’24. 5. 29.)
	2121181	윤미향의원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u>동물혈액관리업무 허가제</u> 신설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정애의원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폐기되었음